

#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품질을 지닌 비식품 분야 벤처육성 기업의 조달청 운영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조달청 추천을 위해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사업
- (대상)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sup>1)</sup> 또는 벤처기업<sup>2)</sup>이며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신청대상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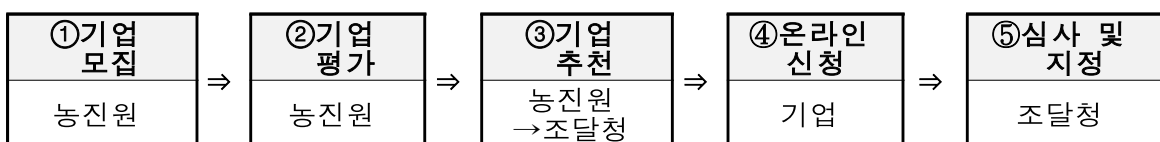
### ◦ (접수일정)

- 1차(3. 30.~5. 19), 2차(5. 26~7. 22) 3차(7. 28~9. 17)

\* 차수별 최소 3개 기업 또는 5개 제품 모집 시 회차별 평가 및 추천 추진

\* 회차별 모집규모 미달 시 다음회차로 이월하여 모집 및 추진

### ◦ (추진체계) (농진원) 기술·품질 평가/추천 → (조달청) 지정여부 심사



## 2

## 제외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 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 3

## 기술 · 품질평가 및 추천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서류평가)
- (평가항목) 기술평가(70) + 품질평가(30), 가점 및 면제 항목 등 검토

## 4

## 지원 내용

-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 5

## 참고 및 유의 사항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온라인 신청 必
-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자발적 포기 시 차기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에 있어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서류 미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

## 6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ydxkr0305@koat.or.kr](mailto:dydxkr0305@koat.or.kr))

\* (접수일 최소 일주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관련 연락 필수)

□ **제출서류**

◦ [붙임4]을 참고하여 준비 및 제출

※ 한 개의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파일명 : “기업명”)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강원A<sup>+</sup>센터 장용탁 전임연구원

☎ 033-257-8713 / E-mail : [dydxkr0305@koat.or.kr](mailto:dydxkr0305@koat.or.kr)

◦ 기타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작성 가이드라인	
1)	동일한 세부품명의 서로 다른 규격(또는 모델)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4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2)	2개 이상의 세부품명(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을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세부품명별 작성,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5종 / 놀이매트 상세모델 수_2종 / 고무매트 상세모델 수_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상품설명서	
상품명	세부품명 _ 종 (Ex : 운동용매트_4종)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이상)	
상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신청모델이 여러개일 경우, 각 사진 밑에 모델명 표기	

## 상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쪽 이상)

- ①
- ②
- ③

##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근거해서 기재 후 관련자료 제출

\*특허 기반으로 작성 시, 기술명칭 및 번호 기재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경쟁제품과 차별되는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모델(규격)이 1종인 경우라도 하단표 반드시 작성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아래 예시는 참고용으로, 신청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

<예시>

번호	모델명	식별번호	두께	크기	비고
1	A	98765432	10mm	100x100	
2	B	98765431	20mm	100x150	
3	C	98765430	30mm	100x200	
4	D	98765429	40mm	100x250	



<p><b>품질관리</b></p>	<p>※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p>
<p><b>자재관리</b></p>	<p>※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p>
<p><b>공정관리</b></p>	<p>※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p>
<p><b>검사설비관리</b></p>	<p>※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p>

## 붙임 4 지정신청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발급방법: "나라장터"에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나의나라장터" > 오른쪽 하단에 "출력"	
2	○ 물품식별번호 증빙자료 * 목록화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화면 캡처본 등	
3	○ 사업자등록증 * <b>법인의 경우도 제출</b>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법인등기부등본 * <b>법인기업에 한함</b>	
4	○ 벤처기업 확인서 * <b>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b> 은 반드시 제출 ○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5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 <b>붙임1 참고</b> )	
6	○ 상품설명서 ( <b>붙임2 참고</b> )	
7	○ (품질 평가) 증빙자료 제출 - 품질 인증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품질인증서(법정의무인증) 예시 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div> - 전자제품의 경우 <b>KC 인증</b>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필수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필요 (농업기계 검정대상 기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 및 발행( <b>붙임6</b> )  * 단 신청상품이 예외적으로 <b>법정의무인증 비대상인 경우</b> , 문의처(국가기술표준원,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국민신문고, 인증기관, 관련부처 등)에서 안내받은 비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온라인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 캡처본, 공문 등)을 기타 증빙자료로 첨부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인증서, 검정성적서 등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거나 관련 인증 및 검정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b>붙임3</b> )
8	○ (기술 평가) 증빙자료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각 1부씩	단순 특허증이 아닌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제출
9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b>붙임5 참고</b> )
10	○ 기타 증빙 자료	

## 붙임 5 기술·품질평가 면제 검토 규정

### □ 1-1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 1-2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 □ 1-3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 10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붙임 6****농업기계 검정대상 기종 리스트**

<b>종합검정 (21개)</b>	<p>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농업용 굴착기(전용형, 자체중량 1톤 미만), 관리기(승용형),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승용자주형), 동력수확기(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또는 전용형 벼직파기를 포함한다),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형), 원거리용 방제기 등 21개 기종</p>
<b>안전검정 (21개)</b>	<p>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주행형 동력분무기(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농업용 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농산물세척기, 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농업용 절단기, 베일피복기, 관리기(보행형), 스피드스프레이어(자주형은 제외한다), 사료배합기,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농산물제피기(農産物除皮機)(공기식은 제외한다), 탈곡기(주행형) 등 21개 기종</p>